

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2000. 2. 18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안 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 안 : 1999년 12월 20일 제출
- 회 부 : 1999년 12월 20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관련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명변경 (제2조 제2항)
 - 보건과장 → 사회복지과장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의료보호 업무가 보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보건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